

조선초기 敬差官의 對外交隣 활동

金 順 南*

1. 머 리 말
2. 경차관의 파견과 북로남왜
3. 경차관의 對女眞 활동
4. 경차관의 對倭 활동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조선초기 敬差官은 국가의 각종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朝官으로서 지방에 파견되었던 奉命使臣이었다.¹⁾ 이 시기 경차관은 또한 北虜南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 1) 넓은 의미의 봉명사신은 왕의 명을 받들어 외국이나 지방으로 파견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조선 건국 초창기에 이들 사신들은 외국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봉명사신,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外方使臣으로 구별해 불렀다(任先彬, 『朝鮮初期 '外方使臣'에 대한 試論』, 『朝鮮時代史學報』 5, 1998). 그러나 세조대 이후 지방으로 파견되는 사신들 역시 봉명사신이라 부르는 경향이 나타났고(馳書于京畿敬差官 柳自漢忠淸道 申渙黃海道 申溱慶尙道 鄭活全羅道 李淑城平安咸吉道採訪別監 令審諸邑機穽以聞 時自漢等 各以事奉使于諸道 『世祖實錄』 권34, 10년 8월 기유), 성종대 이후에 봉명사신이란 거의 중앙에서

倭²⁾로도 직접 파견되어 그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그들을 위무하거나 회유하는 활동을 했고 상호간의 무역교섭의 일선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양자간의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 중앙의 대응책을 전달하고 해당 지역 상황을 중앙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事大의 대상이었던 明에는 파견되지 못했다. 특히 교린의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여진과³⁾ 왜인에게만⁴⁾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

지방의 통치와 관련해 파견된 사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근거해 이 연구에서도 중앙에서 지방 통치와 관련해 파견된 사신을 봉명사신이라 부르려 한다(司憲府掌令 權景禧來啓曰 凡奉命使臣 自擇守令 稱爲差使員帶行 其驕從迎送之煩 一如使臣所至 受弊不貲 『成宗實錄』 권220, 19년 9월 병술).

- 2) 北虜南倭란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成宗實錄』 권255, 22년 7월 21일 을미; 『中宗實錄』 권58, 21년 12월 24일 임신; 『明宗實錄』 권33, 21년 10월 13일 경오). 혹 東倭北虜나 南倭北狄으로 호칭되기도 하였으나(『世宗實錄』 권112, 28년 5월 10일 정축) 대개 북방의 여진과 남방의 왜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3) 여진은 통그스계의 동북만주 원주민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금제국을 건설하였던 바, 遼제국을 건설하였던 거란과 더불어 만주를 지배하던 민족의 하나였다. 그런데 한번 통일이 무너지자 원시 상태로 돌아가 13세기부터는 몽고의 지배를 받았다. 여말 선초의 여진에는 흑룡강 유역과 지금의 연해주에까지 걸쳐 어렵을 주로 하는 원시생활을 하는 野人女眞과 또 농업을 주로 하며 수렵·목축을 겸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던 두만·압록강 北岸 산간부의 建州女眞과 송화강 유역의 海西女眞의 3별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명 교체기에 여진이 존재하던 만주는 고려·명·북원 3세력의 쟁점으로 되었다. 명은 '衛'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아우르고자 했으나, 여진과 고려의 반발로 開元以南·鴨綠江以西의 요동 평야를 넘지 못했다. 그리하여 여진은 조선과 명의 지배권 외의 광대한 지역에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건국 후에도 명은 해당 지역을 지배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건주여진에 建州衛·建州左衛·毛憐衛를, 해서여진에 兀者衛·兀者左衛·屯河衛를, 야인여진에 奴兒右衛를 설치하였다. 이들 중에서 특히 두만강 연안의 여진족인 울적합(우디케)과 모련위의 올랑합(오랑캐), 그리고 건주좌위의 알타리(오도리) 등이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데, 조선에서는 특히 이들 두만·압록강 이북의 여진을 '野人'이라고 통칭하였다(震檀學會,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 1962, 116~133쪽).
- 4) 교린의 대상으로서의 왜인은 대마도를 비롯한 서부 일본의 토호 및 足利幕府를 의미한다. 조선 건국후 九州의 今川씨와 周防의 大內씨·豊後の 大友씨·薩摩의 島津씨 등 일본 서해안의 대호족과 山名·細川 등을 비롯한 일본의 대호족, 그리고 대마도의 宗씨가 조선과 교역하였다. 이중 특히 조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은 대마도였

교적인 관점에서 경차관의 대외활동에 관해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리 활발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북방의 야인과 남방의 왜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조선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교린 대상으로서의 이들에 주목했다.⁵⁾ 다음으로 경차관에 대해서는 먼저 그것이 國防·外交, 財政·産業, 賑濟·救荒, 獄事·推刷 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파견한 당하관급 使臣임이 밝혀졌다.⁶⁾ 이후 국가 정책 실현의 실무자로서 경차관이 담당했던 여러 기능들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져, 경차관의 손실담합과 양전 활동과 같은 재정적 역할을 강조한다거나⁷⁾ 또는 그 활동이 지방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중앙관으로서 파견된 臨時使臣인 경차관과 관찰사·수령의 定規 外官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⁸⁾

이 연구들을 통해 조선초기 북로남왜와 경차관에 대한 일정한 이해에는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에서는 당시 국가정책 실무자로서의

경차관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조선초기 교린외교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선초기 임시 봉명사신이었던 경차관이 북방의 여진과 남방의 왜와 관련된 실무에 종사하였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 시기 이른바 교린관계로 일컬어졌던 외교의 실상을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조선초기 경차관의 대외활동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교린외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해 먼저 국가정책 실무담당자로서 경차관의 기능을 살필 수 있고, 다음으로 이 시기 북로남왜에 대한 조선 정책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른바 교린관계로 표방되는 조선초기 대외관계의 단면을 그리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경차관의 파견과 북로남왜

건국초창기 이래 조선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명에 대해서는 事大를 표방하여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하였고, 북방의 여진과 남방의 왜에 대해서는 강온양면책을 구사하는 교린관계를 맺고자 했다.⁹⁾ 조선은 이러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많은 사신들을 파견했다. 그런데 명에 대해서는 성절사·천추사 등 대개 堂上以上官이 각종 명목의 ‘○○使’로서 파견되었다.¹⁰⁾ 이는 명에 대한 외

다. 대마도는 지리상 일본과 조선의 중간에 위치한다다가 토지가 협소 척박하여 식량 등의 물자를 외부에서 구해야만 했던 까닭에 조선과의 교역이 절실하였다. 또한 조선도 대마도가 왜구의 소굴이라 하여 가장 우대하였다(진단학회, 앞의 글, 134~136쪽).

5) 이에 관한 연구는 그 성과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전되었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震檀學會, 『초기의 대외관계』,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 1962.

李仁榮,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1954.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交涉史 研究』, 韓國研究院, 1964.

金九鎭, 『吾音會의 韓采里女眞에 대한 研究』, 『史叢』 17·18, 1973.

李鉉淙, 『조선초기의 대외관계』,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박원호,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한국사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1995.

김구진,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1995.

河宇鳳,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1995.

한문중, 『朝鮮初期의 倭寇對策과 對馬島征伐』, 『全北史學』 19·20, 1997.

6) 鄭賢在, 『朝鮮初期의 敬差官에 대해서』, 『慶北史學』 1, 1979.

7) 李章雨, 『朝鮮初期의 損實敬差官과 量田敬差官』, 『國史館論叢』 12, 1990.

8) 金順南, 『朝鮮初期 敬差官과 外官』, 『韓國史學報』 18, 2004.

9) 박원호, 앞의 글, 282쪽.

10) 세종 원년 하성절사로 떠난 이지숭은 판돈녕부사로 종1품의 지위에 있었으며(『世宗實錄』 권3, 1년 2월 9일 갑신), 세조 12년 하정사로 파견된 趙瑾은 禮曹參議로서 정3품 당상의 지위에 있었다(『世祖實錄』 권40권, 12년 10월 8일 병오). 또한 성종 3년 천추사로 파견되었던 이극균은 同知中樞府事로서 종2품이었고(성종 15권, 3년 2월 8일 을해), 중종 26

교의 목적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인정받으려는 의례적인 것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¹¹⁾

그러나 북방의 야인과 남방의 왜인, 이른바 北虜南倭에 대해서는 주로 3품 당하관~4품의 사신이 파견되었다.¹²⁾ 이들이 바로 경차관이였다.¹³⁾ 경차관은 조선 건국초창기 이래 損實의 踏驗을 비롯한 조선 국내 정책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었던 임시사신이였다.¹⁴⁾ 북로남왜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실무관을 파견하였던 것은 조선이 이들의 문제를 외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내적인 범주에서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조선은 북로남왜를 통치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이 북로남왜와 관련된 사안을 국내적 문제로 파악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조선 백성, 특히 변경과 연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안위와 직결된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조선의 인물을 노략했는데, 태조 4년 喬東 사람 前別將 李堤의 아내에게 旌門을 세워주었는데, 이 일은 그녀가 왜구에 사로잡혀 守節하고 죽었기 때문이었고,¹⁵⁾ 경상도 咸昌縣의 全彦忠이란 사람은 태조 4년 14살로 왜구에 의해 잡혀 유구국으로 팔려갔다가 태종 16년 35살에 비로소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¹⁶⁾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로남왜에 의해 조선 백성들이 당한 침탈의 폐는 생사를 좌우지할 정도였고, 그러므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차관을 파견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취

년 冬至使로 파견된 尹仁鏡 역시 同知中樞府事였다(『中宗實錄』 권71, 26년 8월 11日 壬辰).

11) 李鉉淙, 『對明關係』, 『韓國史』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305~310쪽.

12) 본 논문 말미의 〈부록〉 조선초기 경차관의 대외교린활동 참조.

13) 金順南, 앞의 글, 335쪽.

14) 이에 관해서는 경차관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던 첫 논문인 정현재의 글을 통해 대략 파악할 수 있다.

15) 『太祖實錄』 권7, 4년 5월 15日 丁未.

16) 『太宗實錄』 권32, 16년 7월 23日 壬子.

해야만 했다.

여기에 조선이 북로남왜의 지역을 기본적으로 조선이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간주했던 것도 해당 사안을 국내적인 범주에서 다루었던 한 배경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거니와 조선 건국 초창기에도 명은 조선 북방의 境外까지 그 세력을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이런 형편이었던 데다가 조선은 역사적으로도 해당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여진, 이른바 야인들을 그 영향력 아래 두고자 했다. 태종 4년 5월 19日 計稟使 藝文館提學 金瞻이 명나라에 가져간 奏本에는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주본을 통해 조선이 주장하였던 바는 조선의 동북지방 영토가 公嶮鎭으로부터¹⁷⁾ 孔州·吉州·端州·英州·雄州·威州 등의 고을에 걸친다는 점을 밝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들을 관할하겠다는 것이었다. 태종은 위에 언급된 지역이 遼나라 乾統 7년에 東女眞이 亂을 일으켜서 함주 이북의 땅을 잠시 빼앗아 웅거한 적이 있었으나, 고려 예종대에 그들을 토벌하여 회복하였던 사실을 밝혔다. 또한 그 지역이 元나라 初年 戊午年에 이르러 蒙古에 속하게 되면서 여진의 方言으로 지명을 고쳐 부르기도 했으나, 恭愍王대 고려로 還屬시켰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명의 洪武 21년 2월에 '鐵嶺以北·以東·以西를 遼東 관할에 소속시키라'는 훈지가 있어서 당시 고려에서 密直提學 朴宜中을 파견해 공험진 이북은 요동에 환속했었지만, 공험진 이남에서 철령까지는 조선에 환속했던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 유종들이 조선에서 살아간 지 시간이 오래되면서 조선인과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조선의 賦役에 이바지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지역이 조선의 건국자인 이성계의 祖上이 거주한 지역으로써 4대조의 분묘가 모두 그곳에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런 설명을 통해 태종은 조선의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女眞遺種들을 전과 같이 조선에서 관할하겠다는 주본을 아

17) 공험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후에 세종이 국토개척의 목표로 삼았다(김구진, 앞의 글, 1995, 341쪽).

되었던 것이다.¹⁸⁾ 명은 이러한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해당 지역의 여진인을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⁹⁾

이처럼 조선이 공험진 이남의 여진인을 관할하는 것은 명으로부터도 인정받았고, 해당 지역의 여진인들 또한 “我等順事朝鮮二十餘年矣”라 하여²⁰⁾ 조선에 속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다. 여진인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때때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조선을 섬기고 있는 듯이 하면서도 내심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²¹⁾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선은 사신을 명에 파견해 공험진 이남을 조선에서 관할하겠다는 청을 거듭하면서²²⁾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으로 경차관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태종 5년 7월 23일 大護軍 李楡가 吾音會에 파견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당시 이유는 경차관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는 여진인 童猛哥帖木兒를²³⁾ 招諭하고자 파견되었던 것이었다.²⁴⁾ 이유는 그 한달 후인 8월 28일 돌아왔다.²⁵⁾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동맹가

18) 『太宗實錄』 권7, 4년 5월 19일 기미 “遣計稟使藝文館提學金瞻如京師 瞻與可仁偕行 奏本云… 雖係女眞人民 來居本國地面 年代已久 累經胡人納哈出等兵及倭寇侵掠 凋瘵殆盡 其遺種存者無幾 且與本國人民交相婚嫁 生長子孫 以供賦役 又臣祖上曾居東北地面 玄祖先臣安社墳墓 見在孔州 高祖先臣行里 祖先臣子春墳墓 皆在咸州… 所據女眞遺種人民 乞令本國管轄如舊 一國幸甚”

19) 『太宗實錄』 권8, 4년 10월 1일 기사 “計稟使金瞻 齎準請勅書 回自京師 勅書曰 “勅朝鮮國王李諱 省奏言 參散千戶李亦里不花等十處人員準請 故勅”

20) 『太宗實錄』 권9, 5년 4월 20일 을유(31-325).

21) 이에 대해서는 강성문, 「조선초기 만산군의 유입과 송환」,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420~422쪽 참조.

22) 『太宗實錄』 권9, 5년 5월 16일 庚戌.

23) 童猛哥帖木兒는 두만강 중류 유역의 오음회(지금의 회령)에 자리잡고 있는 韓采里族의 대추장이었다(金九鎭, 「吾音會의 韓采里女眞에 대한 研究」, 『史叢』 17·18, 1973).

24) 『太宗實錄』 권10, 5년 7월 23일 병진 “遣大護軍李楡于吾音會 時朝廷招諭童猛哥帖木兒 我欲留之 故遣楡諭其意”

25) 『太宗實錄』 권10, 5년 8월 28일 신묘 “李楡還自東北面吾音會 童猛哥帖木兒等給楡云 我等

침목아가 계속 京師에 入朝하려는 뜻을 고수하자,²⁶⁾ 태종은 다시 曹恰을 경차관으로 파견해 함께 입조하는 방법으로 차선책을 취했다.²⁷⁾ 그리고 이들에게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기 위해 동북면의 鏡城과 慶源에 貿易所를 설치하여 조선인과 互市하도록 하기도 했다.²⁸⁾

그러는 한편, 조선은 그들에게 위엄을 세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단하여 그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종 9년 8월 청주의 여진 천호 朱因을 목 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이 수령에게 위해를 가하고 난후 兀郎哈 지역으로²⁹⁾ 도망해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이었다.³⁰⁾

또한 그들에게 위엄을 보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파견되는 외관에 대해서는 왕이 직접 옷매무새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기도 했다. 동왕 7년 2월 세종은 江界節制使로 부임하는 金益生에게 여진을 접대할 때에는 金帶를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烏角帶를 사용하라고 당부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³¹⁾ 그리고 해당 지역의 조선 외관이 그들과 접견할 때에는 군신간의 의례를 채택하도록 하여 도관찰사·도절제사 등은 (북

不從朝廷招安 王教化的等欲還向朝廷 初 王教化的之來 猛哥帖木兒等 以寓居本國境內 且受厚恩 故陽爲不順朝廷招諭者 以示郭敬儀 內實輸寫納款無貳之誠於王教化的 潛理粧欲隨教化的 赴京師 我國未之知也 既遣李行奏聞 又使楡于吾音會”

26) 『太宗實錄』 권10, 5년 9월 13일 을사 “童猛哥帖木兒 同王教化的 入朝京師”

27) 『太宗實錄』 권10, 5년 9월 14일 병오 “遣敬差官曹恰于東北面 諭童猛哥帖木兒 使同王教化的 入朝也”

28) 『太宗實錄』 권11, 6년 5월 10일 己亥 “命置貿易所於鏡城慶源東北面 都巡問使朴信上言 鏡城慶源地面 不禁出入 則或有闖出之患 一於禁絕則野人以不得鹽鐵 或生邊隙 乞於二郡置貿易所 令彼人得來互市 從之 唯鐵則只通水鐵”

29) 兀郎哈(오랑캐)는 조선과 명의 변경 지역에 살던 여진족이었다. 이들은 압록강 지류 파저강(지금의 혼강) 근처에 자리잡았다(김구진, 앞의 글, 1995, 346쪽).

30) 『太宗實錄』 권18, 9년 8월 18일 정사 “誅靑州女眞千戶朱因 刑曹啓 因教其子竊人牛馬 府使李推使人捕之 因等引弓發矢 欲逃入兀郎哈地面 爲鏡城鎮撫所獲 請依謀背本國律處斬 從之”

31) 『世宗實錄』 권27, 7년 2월 4일 갑진 “江界節制使金益生拜辭 命開素 仍曰 卿赴鎮不可以素食 茲用命卿開素 卿之鎮 當彼人接待時則帶用金 常時則用烏角帶”

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도록 하고, 야인은 비록 都督·指揮일지라도³²⁾ 모두 東西로 나누어 앉게 했다.³³⁾ 이러한 조치는 북방의 여진인들을 포용하는 한편으로 조선이 우위에선 군신관계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조선의 이러한 태도는 남방의 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세종 원년 대마도 정벌을 앞두고 당시 상왕이었던 태종이 대마도 수호 都都熊瓦에게 보낸 글에 “對馬爲島 隸於慶尙道之雞林 本是我國之地 載在文籍 昭然可考”라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은 대마도를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³⁴⁾ 또한 일본의 日向州 太守 源氏 島津元九 같은 이는 조선 국왕에게 表를 올리면서 스스로를 臣이라 칭하면서 방물을 바치기도 했던 바,³⁵⁾ 이는 조선이 남방 제도의 왜인들을 조선의 영향 아래 있는 통치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에 그들도 조선과 군신관계를 표방하고 ‘신하’로 자처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임금’의 지위에 있던 조선은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한 되도록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태종 18년 일본 對馬島 守護 宗貞茂가 죽었을 때 行司直 李藝가 파견되었던 것은 이러한 관계를 돈독히 했던 결과였다. 당시 태종은 이예를 파견해 사망한 그를 致祭하고 賻儀하는 등 특별히 厚賜하였는데, 이 일은 중정무가 대마도에 있는 동안 조선에 대해 충성하고 해적이 邊境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禁制하는데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⁶⁾ 이 경우 조선의 이러한 예의에 대해 대마도에서도 답례의 인사를 하기도

32) 도독·지휘는 조선건국 후 명나라가 만주를 복속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에 衛나 千戶所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관할토록 하기 위해 여진 추장에게 임명한 관직이다(진단학회, 앞의 글, 118쪽).

33) 『世宗實錄』 권59, 15년 3월 20일 계유 “上又曰 前此 野人接待時 都觀察使都節制使向南野人雖都督指揮 皆分坐東西”

34) 『世宗實錄』 권4, 1년 7월 경신(2-326).

35) 『世宗實錄』 권1, 즉위년 10월 14일 경인 “日本國日向州太守源氏島津元九 上表稱臣 獻土宜”

36) 『世宗實錄』 권35, 18년 4월 24일 갑진 “日本對馬島守護宗貞茂死 遣行司直李藝致祭 仍賻米豆紙 貞茂之在對馬島也 威行諸島 向慕國家 禁制群盜 使不得數侵邊境 故其死也 特厚賜焉”

했다.³⁷⁾ 이처럼 조선과 남왜는 北虜와 마찬가지로 군신관계를 전제로 하여 친선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의 이러한 태도는 『國朝五禮儀』 賓禮편에서 이들에게 君臣관계와 유사한 의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諸島の 倭人과 諸種 野人 酋長과 그 使人에게 연회를 베풀어 줄 때에 조선의 예조판서는 북쪽에 앉고 참판과 그들이 동서로 앉도록 자리배치를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판서와 참판 앞에 나와 머리를 수그리고 두 번 절해야 하는데, 이를 받는 조선 관리는 답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 술을 마시되 대작하는 예도 없다.³⁸⁾ 위의 규정된 의례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은 북로남왜를 조선과 별개인 이웃한 국가로 파악하였던 것이 아니라 君-臣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이들을 조선의 질서 체계 속에 편입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은 북로남왜를 군신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경차관이 파견되었을 경우, 조선의 國威를 손상하는 것이 그 활동의 가장 큰 실책으로 간주되었다. 성종 24년 9월 영안도 경차관으로 파견된 金永貞은 그러한 이유로 처벌받았던 경우였다. 당시 김영정은 울적함(오랑캐)이 잡아간 인마를 推問하여 쇠환하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울적함의 여진인이 자신들에게 농기구를 제공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쇠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었고, 결국 김영정은 본래의 임무를 마치지 못했다. 성종은 이 사실을 접하고 난 뒤 쇠환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는 야인에게 엄포를 주어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타이르기만 하는 고식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그를 비판했다. 아

37) 『世宗實錄』 권1, 즉위년 9월 2일 기유 “日本國對馬州守護代榮 遣人獻土宜 致書于禮曹曰 前者 遣敬差官李藝 以貞茂死致賻祭 都都熊瓦感極不已 判書答書曰 向遣李藝 致賻物薄 今乃示以遙謝之意 深用爲愧 不腆土宜 具在別幅”

38) 『國朝五禮儀』 권5, 賓禮, “禮曹宴隣國使儀 宴諸島倭及諸種野人酋長與使人 則判書北壁 參判東壁 參議差後 客人西壁 客人就判書參判前 頓首再拜 並無答拜 設各呈陪以飲 如常 無行酒之禮”

올러 그의 태도는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김영정은 마침내 금부의 국문을 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³⁹⁾

성종 24년 11월 경상도로 파견된 경차관 鄭錫堅도 유사한 경우였다. 당시 정석견은 왜인들이 東島를 점유하고 고기잡이를 하였으므로 이를 추문하고자 倭人墾田處推考敬差官으로 파견된 것이었다. 그런데 정석견은 조선인을 刑訊하고 왜인을 鞫問하고 그 추장을 잡아 조정의 처치를 기다렸어야 했는데도 그리 하지 않고 도리어 왜인들과 더불어 동도에 함께 가서 살펴 보았다. 이 사실에 접한 성종은 역시 경차관에게 왜인을 추문하도록 하는 임무를 위임한 뜻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를 憲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했다.⁴⁰⁾ 이때의 정석견의 죄는 이른바 나라의 위엄을 훼손시켰다는 ‘虧損國威罪’로 논하여져 杖 90대를 속바치는 데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⁴¹⁾

이처럼 조선은 그 초창기부터 북방 지역을 조선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을 관할하고자 했다. 또한 남방의 왜에 대해서도 군신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했다. 이들 북로남왜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선을 살아가는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통치의 실제 현장이 되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했던 경차관을 역시 그들에게도 파견해 그로 하여금 해당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경차관은 북방의 여진과 남방의 왜와 관련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활동의 통해 이른바 交隣 外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경차관의 對女眞 활동

조선초기에 북방의 경계에는 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은 수렵과 목축에 종사했는데, 이들은 조선과 명으로부터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경우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들은 양국의 변경을 침범했다. 이에 조선은 이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방의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여진족들과 이른바 교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그 유력자에게 관직을 수여하거나 조선여자와 결혼을 장려하여 귀화시키거나 집·노비·의복·말·식량 등을 관급하는 등으로 회유를 시도했다.⁴²⁾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정벌하고 해당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개척하기도 했다. 세종대 4郡을 설치한 다거나 金宗瑞가 6鎭을 개척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 방면까지 우리의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해당 지역 여진에 대한 무력 정벌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또한 이후에도 여진에 대한 정벌은 계속되었는데, 규모가 큰 것만 열거한다 해도 세조 6년의 신숙주의 울랑함 정벌, 세조 13년 건주 위 도독 이만주 부자 참살, 성종 22년 허종의 울적함 정벌등이 그러한 사례였다.⁴³⁾

경차관은 이러한 조선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경차관은 그들과 무력 충돌을 피하고 그들을 위무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거나, 혹은 회유를 통한 평화관계를 우선으로 했음에도 군사를 동원하여 전투가 감행되어야 했을 때는 그에 관련된 軍事에 종사했던 것이다.

39) 『成宗實錄』 권282, 24년 9월 16일 정미(12-402).

40) 『成宗實錄』 권284, 24년 11월 15일 병오(12-439).

41) 『成宗實錄』 권285, 24년 12월 7일 정묘 “司憲府啓 同副承旨鄭錫堅 以倭人墾田處推考敬差官 錯料機宜 既不刑訊本國人 又不囚係倭人 又與倭人往審東島 屢失事 虧損國威罪 律該杖九十贖 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

42) 이현중, 「여진관계」, 『한국사』 9, 1981, 416~422쪽.

43) 이현중, 앞의 글, 424~434쪽.

먼저 조선초기 경차관은 여진을 회유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⁴⁴⁾ 이 시 기 경차관의 여진 위무 활동은 세종 6년의 前判司宰監事 柳季聞과 大護軍 池畬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년 1월 17일 세종은 유계문과 지사를 경차관으로 파견해 楊木答兀에게 교서를 주고 동맹가첩목아에게 宣醞을 주어 초무하고자 했다.⁴⁵⁾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은 2월 25일 서울로 돌아와서 복명하면서 보고한 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동맹가첩목아 등이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30리쯤 떨어진 阿木河(지금의 회령)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사를 시켜 동맹가첩목아에게 통지했다. 그러자 맹가첩목아가 군사 2백여 명을 거느리고 10리쯤 되는 곳의 길 왼편에서 영접했다. 이때에 그는 몸을 굽혀 세종의 명을 맞이했다. 우계문과 지사는 맹가첩목아로 하여금 앞길을 인도하게 해 그의 집까지 가서 세종의 慰諭하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맹가첩목아가 교서를 받을 양목답울이 부재중임을 밝히면서 바로 꿰어앉아 자신 역시 그것을 듣고자 원한다고 했다. 이에 경차관은 천호 王毛長으로 하여금 먼저 漢語로(교서를) 읽어 준 다음 여진말로 해석하게 했다. 이를 들은 맹가첩목아는(그 내용을) 수긍했다. 그러나 세종이 내리는 술이 혹 자신에게 위해를 주지는 않을까 의심해 절하고 받기는 하면서 마시지는 않았다. 이에 경차관이 설득하여 다 마시게 했다. 그러고 난후 맹가첩목아는 의심을 풀고 유계문을 北壁에 앉으라 하고, 지사는 東壁에 앉게 하고, 스스로는 西壁에 앉아 주연을 베풀었다. 또한 유계문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것을 청했다. 이에 유계문은 그를 받아들여 그의 집에 유숙하기조차 했다.⁴⁶⁾

44) 『成宗實錄』 권162, 15년 1월 1일 기축 “永安道觀察使李淑琦來啓曰 近者 兀狄哈等 聚徒衆 攻殺會寧城底幹朶里等 掠畜產而去 臣給鹽布等物 存撫之 舊例 幹朶里若遇如此侵暴 則別遣 敬差官慰之 命考例以啓”

45) 『世宗實錄』 권23, 6년 1월 17일 갑오 “命遣前判司宰監事柳季聞大護軍池畬 齎賜楊木答兀 教書及童猛哥帖木兒宣醞 往阿木河”

46) 『世宗實錄』 권23, 6년 2월 25일 辛未 “咸吉道敬差官右司諫柳季聞大護軍池畬來復命 言於 承政院曰 初至阿木河 距童猛哥帖木兒等所住一舍 先使通事通之 猛哥帖木兒率兵二百餘人 迎于十里許道左 躬身迎命 余使之前導 至其家 且陳上慰諭之意 猛哥帖木兒言 楊木答兀爲覓

위 사례를 통해 경차관 위무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먼저 경차관은 해당 여진 추장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고 심지어 그의 집에서 유숙하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진 추장은 위무의 뜻을 전하는 조선 국왕에 대해 꿰어앉거나 혹은 위임받은 사신을 북벽에 앉힘으로써 신하의 예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진 추장과 연회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위무했던 것이다.

성종대 경차관의 사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진인들을 조선의 영역으로 招撫하여 경작하며 살도록 한 경우였다. 성종 17년 5월 경차관 金梯臣이 아인을 초무하기 위해 영안도 會寧으로 갔다.⁴⁷⁾ 영안도초무경차관 김제신은 알타리 등 해당 지역 아인들에 대한 계획과 주거 상황 등에 관한 계를 성종에게 여러 차례 올리었다.⁴⁸⁾ 아울러 알타리들이 안심하고 경작하며 살 수 있도록 회령에 장성을 쌓으라는 내용으로 치계하기도 했다.⁴⁹⁾ 중앙에서는 영안남도 절도사의 본영을 옮기는 논의가 있자, 당시 해당 지역에 있던 그에게 편부를 살펴 정하라고 馳書하기도 했다.⁵⁰⁾ 영안도에서 6개월 동안 알타리 초무 활동을 하였던 김제신은 11월 21일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알타리 중에서 이미 초무해 온 자가 32가구, 집을 지어 장차 돌아올 자가 11가구, 돌아오기를 약속하고 오지 아니한 자가 7가구, 惠山으로 들어간 자가 9가구, 蒲州로 들어간 자가 14가구임을 적시했다. 이에 성종은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경차관의 공로라 하여 그에게 포상하고자 했다.⁵¹⁾

糧 歸于四舍程常家等處 仍跪言 教書 雖諭楊木答兀 吾亦願聞之 我使千戶王毛長以漢訓開讀 又以女眞解之 猛哥帖木兒云 楊木答兀背皇帝到此 予亦心不寧 來則予當開說 遂饋宣醞 猛哥帖木兒拜受 疑而不飲 余曰 宣醞不可不飲 勿疑 遂卒爵 請予坐北壁 池畬坐東壁 自坐西壁 陳盛饌 相與醉飲 又請余宿 予從之 猛哥帖木兒喜而釋其疑”

47) 『成宗實錄』 권191, 17년 5월 25일 기사(11-126)

48) 『成宗實錄』 권193, 17년 7월 14일 丁巳(11-133); 『成宗實錄』 권194, 17년 8월 1일 癸酉(11-137); 『成宗實錄』 권194, 17년 8월 1일 癸酉(11-138).

49) 『成宗實錄』 권194, 17년 8월 14일 丙戌(11-139).

50) 『成宗實錄』 권195, 17년 9월 23일 乙丑(11-144).

위 두 사례를 통해 조선초기 경차관의 여진 위무활동이 단지 그들에게 교지를 전하고 선물을 주는 데에 그쳤던 것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경차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었고, 결국 이러한 경차관의 활동을 통해 북방 여진과의 평화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편으로 북방의 여진들이 조선의 변경을 침범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에 조선은 그들과의 일전을 불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차관은 활약했다. 이때 경차관은 해당 지역 지휘관에게 중앙의 대응책을 전달하거나 혹은 위급상황의 전말을 중앙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태종 10년 2월 3일 兀狄哈⁵²⁾ 金文乃와 葛多介 등이 알타리·올랑합(오랑캐)의 甲兵 3백여騎와 결탁하여 慶源府에 入寇하였다. 이에 兵馬使 韓興寶가 戍兵 1백 인을 거느리고 出戰하였는데, 홍보가 탄 말이 화살에 맞아 죽고, 홍보도 세 발의 화살을 맞고 겨우 성안으로 들어갔다 3일 만에 패사하였다. 이때 官軍 15인이 죽고 말이 죽은 것도 5필이었다. 적이 마침내 木柵을 넘지 못하자 목책 밖의 廬舍에 불을 질러 蓄積해 둔 것이 거의 타 없어질 지경이었다.⁵³⁾ 이 일이 있는 지 일주일 후인 2월 10일 동북면 兵馬都節制使 延嗣宗이 이 사실을 馳報했다. 그러자 태종은 吉州察理使 趙涓에게 명하여 을적함을 치려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⁵⁴⁾ 이때에도 경차관이 파견되

었다. 그것은 결전을 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의 정세를 정탐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대호군 朴楸가 경차관이 되어 경원으로 가서 事變을 조사 탐지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접전할 때의 軍中의 영리한 자 1인을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다.⁵⁵⁾

그러는 한편 태종은 다시 대호군 黃碩中을 동북면 경차관으로 삼아 동맹가침목아에게 酒饌을 보내주어 위무했다.⁵⁶⁾ 아마도 이는 접전 과정에서 조연 등이 동맹가침목아의 管下에 있는 指揮 阿亂의 孫子인 吾都里的 哈兒非·加時仇를 붙잡아 모두 죽였기 때문에 猛哥가 분을 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미리 이들을 위무하고자 경차관을 보낸 것이었던 듯 하다. 실지로 맹가는 이를 기회로 入寇하고자 했고, 이에 대해 태종은 참살 당사자인 조연을 연사종으로 대신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시 전홍을 경차관으로 보내 그를 위로했다.⁵⁷⁾ 그리고 전투의 뒤처리를 위해 의정부의 계에 따라 軍卒의 死傷과 兵器의 擄奪을 조사하고, 인민의 耕種에 대한 편부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4월 23일 上護軍 尹夏를 다시 동북면 경차관으로 파견했다.⁵⁸⁾ 그 후 이들 운하와 박미는 약 한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5월 29일 돌아와 복명했다. 그리고 이때에 경성·경원 등지의 전황과 그 결과에 대한 상황을 보고했다.⁵⁹⁾

그런데 의정부에 의해 이들의 동북면에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51) 『成宗實錄』 권197, 17년 11월 21일 壬戌 “永安道幹朶里招撫敬差官金梯臣來復命 書啓曰 今招撫而來者 三十二家 造家將還者 十一家 約還而未來者 七家 惠山入歸者 九家 蒲州入歸者 十四家 傳于承政院曰 還到接者 已多 是敬差官招撫之力也 予欲賞之 其考例以啓 梯臣啓曰 臣見還到之人 皆欲來朝 請從其願 以慰向慕之意 傳曰 知道”

52) 兀狄哈(우디케)는 송화강 목단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으로서 반농반목의 생활을 영위했다. 이들은 조선과 일부만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접촉의 기회는 적었지만 성격이 포악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강성문, 『朝鮮時代의 女眞征伐』, 『韓民族의 軍事的 基盤』 200, 430쪽).

53) 『太宗實錄』 권19, 10년 2월 3일 경자(1-528).

54) 이것이 이른바 모련위 정벌로서 조선이 단행한 최초의 여진정벌이었다(김구진, 앞의 글,

1995, 338쪽).

55) 『太宗實錄』 권19, 10년 2월 10일 정미 “命吉州察理使趙涓 往伐兀狄哈 … 以大護軍朴楸爲敬差官 如慶源體探事變 命回還之日 率接戰時軍中穎悟者一人以來”

56) 『太宗實錄』 권19, 10년 2월 26일 계해(1-531).

57) 『太宗實錄』 권19, 10년 3월 26일 임진 “召趙涓還 … 豆門之戰 趙涓等執吾都里哈兒非加時仇 問以賊變 遂竝殺之 二人 皆童猛哥管下指揮阿亂之孫也 猛哥由是怒甚 謀入寇上乃以延嗣宗代趙涓 … 乃以田興爲敬差官而送之”

58) 『太宗實錄』 권19, 10년 4월 23일 기미 “議政府啓曰 慶源將卒 與兀狄哈接戰敗績 其間事狀 不可盡信 請遣朝士一人 軍卒死傷兵器被奪之數 人民耕種便否 詳察而來 上曰 然 遂以上護軍 尹夏爲東北面敬差官 令空其城 只留軍士”

59) 『太宗實錄』 권19, 10년 5월 29일 을미(1-552).

사실이 전해졌다. 경차관으로서 윤하·박미는 전년의 동북면 龍城 전투에 참여한 군관들의 등수를 정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에 공이 없는 자를 함께 기록해 아뢰어 잘못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그들은 처벌받기에 이르렀다.⁶⁰⁾

위의 사례를 통해 여진과의 무력 충돌시 경차관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때 경차관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정세를 정탐하거나 혹은 전투가 끝난 후 결과를 조사하고 인민의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던 것이다.

다음의 세조 7년의 사례는 이러한 경차관의 활동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세조는 동왕 5년 1월 올랑합과 올적합(우디케)를 화해시키고자 申叔舟를 威吉道都體察使로 삼아 떠나게 하였다.⁶¹⁾ 이때 도체찰사 신숙주는 경원에 있으면서 여러 鎭의 여러 酋長들을 모아 우디케의 인물을 刷還하였고, 富寧府使 吳益昌으로 하여금 虛水刺의 賊路를 살피게 하였다. 그런데 신숙주가 주관한 이 회합에 浪孛兒罕⁶²⁾이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신숙주는 함길도도절제사 楊汀에게 이들을 開諭하라 조치하고⁶³⁾ 4월 17일 돌아왔다.⁶⁴⁾

도체찰사 신숙주가 돌아간 뒤 해당 지역 야인들의 정세를 정탐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였던 것은 경차관 강효문이였다. 강효문은 鍾城에 온 낭발아한과 그 무리들을 추궁하여 죄를 자백받았다.⁶⁵⁾ 이러한 강효문의 활동이 전해지자 세조는 그에게 일일이 取旨하여 시일을 遲滯할 필요 없이

60) 『太宗實錄』 권22, 11년 9월 26일 갑신 “議政府請尹夏朴楳之罪 啓曰 前年五月十五日 東北面龍城之戰 敬差官尹夏朴楳等第 其軍官功績 來告賞職 今聞楳等 以無功者并錄啓聞 願將楳等 以其時慶源節制使郭承祐一處憑考 以正矇矓之罪 從之”

61) 『世祖實錄』 권15, 5년 1월 29일 임자(7-311).

62) 浪孛兒罕(낭페르칸)은 무산지역의 오랑캐 추장이였다(강성문, 앞의 글, 435쪽).

63) 『世祖實錄』 권16, 5년 6월 11일 신유.

64) 『世祖實錄』 권16, 5년 4월 17일 무진.

65) 『世祖實錄』 권16, 5년 6월 11일 신유(7-331): 세조 17권, 5년 7월 17일 병신.

그때그때 적절히 布置하라는 명을 특별히 내리기도 했다.⁶⁶⁾ 그런데 이후 다시 낭발아한과 그 아들인 浪伊升哥가 조선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그러자 세조는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5월 3일에 다시 兵曹正郎 吳伯昌을 경차관으로 함길도에 파견하여, 낭발아한 부자의 죄를 국문하고 그를 잡아 서울로 보내도록 했다. 이때에 오백창은 御札로 된 사목을 휴대하고 갔다.⁶⁷⁾ 그 후 약 석달 반만인 8월 26일 오백창은 낭이승가를 잡아 서울로 왔다.⁶⁸⁾ 그리고 그 이틀 후 8월 28일 낭이승가는 서울의 문밖에서 처단 당하였고, 다시 김국광을 경차관으로 파견해 그 아비와 기타 여당을 소재지에서 참수했다.⁶⁹⁾ 그런 다음 세조는 함길도에 있는 경차관 강효문에게 이 사실을 유시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함으로써 최종 마무리했다.⁷⁰⁾

이러한 조선초기 경차관의 활동은 사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사건이 있은 후 세조는 다시 함길도 경차관으로 藝文館直提學 강효문을 임명하여 사목을 주어 보냈다. 그 사목에는 경차관의 활동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① ‘兀良哈이 사로잡혔던 사람을 돌려

66) 『世祖實錄』 권17, 5년 7월 20일 기해 “承政院奉旨馳書于威吉道敬差官康孝文曰 今得浪孛兒罕服罪事具悉 賞米當從優給之 然此等事在爾臨機布置 不可一一取旨 以致稽緩”

67) 『世祖實錄』 권17, 5년 8월 3일 임자 “向化浪伊升哥妻從兄崔適密啓 伊升哥妻言 伊升哥欲往中國 預備行裝有日 今必因浴 遂往父處 前此 伊升哥 請暇往吉州溫井治病 發程已數日矣 上召右議政申叔舟及兵曹判書韓明澮議 孛兒罕父子罪 不可赦 命以兵曹正郎吳伯昌爲威吉道敬差官 往囚孛兒罕父子家小… 吳伯昌齎去御札事目 一召孛兒罕時 勿誘致 與酋長雜召之 既至 囚孛兒罕父子 語諸酋長以孛兒罕之罪一 語孛兒罕扇動之罪 則諸酋恐緣及推問 或致騷動 宜又語之曰 孛兒罕 前日申叔舟在慶源招諸酋時 造爲浮言 托故不來 其罪獨當 他無所及”

68) 『世祖實錄』 권17, 5년 8월 26일 을해 “敬差官吳伯昌 拿浪伊升哥以來 命囚義禁府 傳曰 伊升哥 當初請浴吉州溫井 後往會寧親父 而不入溫井 經往會寧 且欲往中國而不先啓達 其推鞠以聞”

69) 『世祖實錄』 권17, 5년 8월 28일 丁丑 “卽命義禁府誅伊升哥于門外 遣知事金國光 斬浪孛兒罕仇羅加麟應哈阿兒哥秃無者毛多可者邑哈無同可于所在”

70) 『世祖實錄』 권17, 5년 9월 20일 기해 “諭威吉道敬差官康孝文曰 和解事已成 未刷還者不多 不必強刷 其付都節制使審勢施行 爾可上來”

주지 않으므로, 지금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고 兀狄哈이 말하면 '세조의 명령에 따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신중하라'고 대답할 것, ② 東良北 근처의 野人들은 후일에라도 반드시 올 것이니, 서둘러 접대하여 의심을 살 필요는 없을 것, 다만 국가의 명령을 천천히 開諭할 것, ③ 會寧 등지의 野人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阿比車를 포획하면 후한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회유할 것 등이다.⁷¹⁾ 이로써 조선초기 경차관이 무력 충돌과정에서 뿐 아니라 이후 야인 부족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그들을 조선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정책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초기 경차관은 북방의 여진들에 대하여 위무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강경태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여진부락에까지 직접 들어가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그들이 조선의 변경을 침입하여 위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들과의 접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차관의 활동은 결국 이 시기 조선의 외교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조선이 북방 여진들에 대해 취한 교린정책은 대개 이들 경차관의 활약에 힘입어 그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4. 경차관의 對倭 활동

여말선초 이래 왜구가 대단히 심하였던 상황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불식되지 않았다. 이들은 대개 식량과 물자뿐만 아니라 인민을 약탈하여 노예로 전매하기도 했다. 조선은 북방 여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왜구를 금지시키기 위해 이른바 교린을 표방하였다. 이때의 교린정책이란 정치적으로 그들이 복속해 오게 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조선의 변경을 소란하게 하지 못하도록 사전방지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건국

71) 『世祖實錄』 권18, 5년 11월 무술조(7-356).

후 우선 왜구를 평화통교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선의로 내왕하는 자들은 허용하는 동시에 그들의 침입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제재하였다. 이에 국초부터 그들에게 위무 회유정책을 적용하면서 물자를 후하게 내려주고 인물의 교류를 권장하였다. 그런데 태종대 들어 평화적인 무역 통교자인 왜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에 태종대보다 대외관계에 유화적이었던 세종대에 조차 그들의 위반에 따른 제한규정을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태종대에는 조선에 들어올 때에 도항증명서인 文引을 지참한 興利船만 허용하도록 통제를 가하기도 했고, 이후 세종 8년에는 부산·염포·제포의 3포를 열어주었으며, 세종 25년에는 계해약조에 의해서 세전선의 수와 세사미두의 양을 긴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인들은 조선의 연해지방을 약탈하는 일을 완전히 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조선은 강경태세를 견지하여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세종 원년의 대마도 정벌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⁷²⁾

조선초기 경차관은 남방 왜인에 대한 조선의 이러한 교린정책의 일선에서 있었다. 이들은 대마도 등지로 파견되어 유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또한 경차관은 조선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난동을 일으켜 문제가 되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북방 야인과의 무력충돌에서 나타난 것처럼 왜인과의 경우에도 경차관이 파견되어 군사 정벌에 따른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대마도를 왕래하는 3품 이하의 경차관에게는 15석의 쌀과 콩이 지급되었다.⁷³⁾ 그리고 이들은 경우에 따라 종사관이나 군관 등 수행관을 대

72) 조선의 대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진단학회, 앞의 글, 1962, 134~141쪽.

이현중, 앞의 글, 1981, 356~416쪽.

하우봉, 앞의 글, 1995, 367~410쪽.

73) 『世宗實錄』 권81, 20년 4월 9일 임술 “議政府據禮曹呈啓 日本國對馬島往來使臣 不分官品

동하기도 했다. 세조 7년 7월 대마도의 宗成職에게 벼슬을 제수하기 위해 行上護軍 金致元이 경차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종사관으로 都官 佐郎 金瓘을 삼았다.⁷⁴⁾ 그리고 성종 25년 2월 대마도 경차관으로 임명된 權柱는 그의 군관으로 許臧·李世綸·朴自範 등을 삼고자 성종에게 스스로 청했다. 이때에 권주가 이세륜을 군관으로 청한 것은 자신이 이세륜의 아버지인 이조판서 李克墩의 천거로 경차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이었다.⁷⁵⁾ 당시 권주는 薺浦의 왜인이 魚梁을 다투어 빼앗는 일을 島主에게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던 것인데,⁷⁶⁾ 이때에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미 조선에 와 있던 대마도 도주 宗貞國의 從弟인 助國次와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되었다.⁷⁷⁾ 이렇게 3월 26일 출발한 권주는 그 녀달 뒤인 7월 27일 돌아와 복명했다.⁷⁸⁾

이 시기 경차관은 북방 여진정책과 마찬가지로 왜인들과도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므로 그를 위한 여러 일들을 수행했다. 세종 29년 4월 16일 전병조좌랑 曹彙가 대마도로 파견되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당시 대마도주인 宗貞盛의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세종은 그를 위로하고자 米豆·布貨 등 물건을 전했는데, 이때에 그를 전달한 것이 바로 조취였다.⁷⁹⁾

경차관 조취는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대마도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5월 6일 돌아와 복명했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시기 대마도에서의

依赴京二品以上使臣 皆給米三十石 未便 今後對馬來往三品以下敬差官 依三品以下赴京單使例 給米豆共十五石 從之”

74) 『世祖實錄』 권25, 7년 7월 11일 기유(7-474).

75) 『成宗實錄』 권287, 25년 2월 14일 계유 “對馬島敬差官權柱 請以許臧李世綸朴自範爲軍官 傳曰 可 史臣曰 世綸 克墩之子 克墩 前判兵曹 薦成俊爲永安道節度使 俊舉克墩之子世卿爲幕客 今判吏曹 薦權柱爲對馬島敬差官 柱 以其子世綸爲軍官 克墩語人曰 我再爲人所中”

76) 『成宗實錄』 권288, 25년 3월 8일 정유(12-490).

77) 『成宗實錄』 권288, 25년 3월 12일 신축.

78) 『成宗實錄』 권292, 25년 7월 27일 계축(12-567).

79) 『世宗實錄』 권115, 29년 3월 16일 무인(5-9).

경차관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조취가 하사물과 예조의 서간을 가지고 대마도에 이르자, 종정성이 밖에 나와 마중하였다. 종정성은 廳으로 들어가서 北向하여 꿇어앉아서 서간을 받아 탁자 위에 놓고, 향을 올리고 물러나서 세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난후 그는 조취와 더불어 읍하는 예를 행하고 사례하였다. 대마도주 종정성은 세종이 하사물을 내린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때 조취는 종정성에게 첫째, 조선의 경상도 孤草島에서 법을 어기고 고기잡이한 왜인을 치죄하고, 둘째, 그 외의 섬에서는 왜인들이 고기잡이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또한 대마도와 조선을 왕래하는 배의 수효를 1년 50척에 한한다는 조선의 뜻을 전하였다. 조취의 전달에 종정성은 그 명령에 따르겠다고 했다. 또 종정성의 수하들 역시 조취에게 도주가 조선을 지극히 섬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법하는 왜인에 대해서는 조선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정성은 섬 안의 모든 두목들로 하여금 매일 조취에게 와서 위로하고 칼 등을 기증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취는 그것을 다 받지 않았다. 이런 시간을 보낸 후 조취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때에도 종정성은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올려 조선의 은혜에 사례하고, 예조에는 조선의 요구대로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덧붙여 醫術에 정통한 승려 崇泰를 조선에 보내기도 했다.⁸⁰⁾

위 사례를 통해 당시 조선과 대마도 왜인과의 교섭 관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君’의 지위에서 그를 대우했고 대마도는 조선에 대해 ‘臣’의 태도로서 섬겼다. 이 때문에 대마도주는 조선 예조에서 내린 서간을 맞이하면서 북향하고 꿇어앉는 극존의 태도를 취했고, 조선 왕의 뜻을 위임받은 경차관에 대해 극진하고 융숭히 대우해 사례했던 것이다.

그런데 권주의 사례를 통해 살핀 바와 같이 경차관은 기왕에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왜인의 범법 활동에 대한 조선의 항의를 전했다. 그것은 이전에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인물의 교류를 둘러싼 협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80) 『世宗實錄』 권116, 29년 5월 6일 병신(5-21).

데, 이것도 경차관의 휴대사목을 통해 나타난다. 세종 21년 대마도 경차관이 휴대한 사목을 보면 그 협정의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그 사목에는 使送船 규모에 대한 제한, 대마도주인 종정성의 문인이 있는 자에 한한 무역의 허가, 위조 書契의 핵심 등이 규정되어 있다.⁸¹⁾ 이를 통해 조선 초기 경차관이 대마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실무를 전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은 경차관을 통해 대마도 왜인들과 협정을 맺고 제한적인 속에서나마 상호 인물의 교류를 허용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의 의도하지 않게 누설될 염려가 있었는데, 이를 금지하고 주의하기 위해서도 역시 경차관이 파견되었다. 세조 7년 6월 18일 副知司譯院事 尹子滌이 경상도 경차관으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이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 앞서 올린 慶尙右道處置使 李茵의 계문 때문이었다. 이인은 제포의 船軍이 倭虜와 섞여 살면서 서로 왕래하며 교류하는 까닭에 箭箭의 사용법이 누설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한다는 요지의 계를 올렸다. 이에 조정의 의논 결과 조관을 파견하여 선군이 왜인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開諭하게 했고, 이 일을 위해 경차관이 임명된 것이었다.⁸²⁾ 그런데 이때 임명된 윤자영은 학문은 알지만

81) 장황하지만, 그 사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使送船을 大中小 및 小小船으로 구분하고, 格人의 常數를 大船 40명, 中船은 30명, 小船은 20명, 小小船은 10명으로 정한다. ② 규정에 따라 양식을 주고, 그 수 외의 사람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다. ③ 종정성과의 약조에 따라 文引이 없는 자는 접견을 허락하지 않는다. ④ 사절단 문서의 위조가 염려되니 문서번호와 인명의 총수를 기재한다. ⑤ 이미 위조된 書契를 확인한다. ⑥ 使送客이 소지한 서계의 진위를 분간하여 핵심한 뒤 문인을 발급한다. ⑦ 물건의 양에 따라 객인의 서울에서의 매매기간을 2달~20일로 정한다. ⑧ 대마도 도망인의 쇄환을 요구하는 자는 접대하지 않는다. ⑨ 종정성 이외의 문인과 서계를 엄금한다. ⑩ 대마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을 三浦에 고루 나누어 보내며, 거주 浦의 이름을 서계 안에 쓴다. ⑪ 종정성의 문인이 없으면 접대하지 않는다(『世宗實錄』 권85, 21년 4월 갑진조).

82) 『世祖實錄』 권24, 7년 6월 18일 정해 “先是 慶尙右道處置使李茵馳啓 臣所管齊浦船軍與倭虜雜處 交相往來 恐無知之徒 爲其所弄 說與箭箭之用 且彼類精巧 一經見之 則必不許船軍交通 倭虜 使倭不得見兵器所在 … 傳曰 卿言是矣 但今使船軍與倭虜不得私相往來 則彼必知我國禁絕交通 而一二年之後 法不如初 復如今日 則不亦無益乎 叔舟啓 我國禁防已久 倭人亦知之 今若諭令勿禁 則前者立法亦隨以毀 且茵非以文字相通 使之騷擾 乃與萬戶秘議耳 不可諭令勿禁也 傳曰 今以文字諭之 則必致騷擾 使倭有疑貳之心 可遣朝官開諭 卽以副知司

성품이 어리석고 우매하다는 세조의 판단에 따라 訓練副使 李垵로 교체되었다.⁸³⁾ 이질은 6월 23일 그에 관한 사목을 휴대하고 해당 지역으로 출발해서 국가 기밀의 유출을 막되 그 사실을 왜인들이 의심하여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⁸⁴⁾

이처럼 기본적으로 왜인들과의 충돌을 막고자 하는 것이 조선의 의도로서, 이에 따라 경차관이 파견되어 그로 하여금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섭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그러나 경차관이 처음 출현한 것이 왜구의 격퇴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⁸⁵⁾ 왜구가 조선 연안을 침입하는 일은 불식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군사조치를 강구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종 원년의 대마도 정벌로써⁸⁶⁾ 이때에도 경차관이 활약했다.

세종 원년 대마도 정벌이 이루어진 계기는 그해 5월 13일 올라온 황해도 감사의 급보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5월 11일에 적선 38척이 助戰節制使 이사검과 만호 이덕생이 이끄는 병선 5척을 에워싸고 협박했으므로 양식을 구해 주었으나 도리어 토색질을 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 그들과 대치중이라는 것이었다. 상왕 태종과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前禮賓少尹 張友良을 황해도 경차관으로 명하고, 아울러 경기·황해도 조선 병마사를 임명하여 즉시 출발하게 했다. 이를 계기로 허술한 틈을 타서 대마도를 섬멸하자는 계획이 밀의되었던 것이다.⁸⁷⁾ 대마도 정벌이 감행

譯院事尹子滌爲慶尙道敬差官”

83) 『世祖實錄』 권24, 7년6월 21일 경인(7-470).

84) 『世祖實錄』 권24, 7년 6월 23일 임진 “慶尙道敬差官李垵辭 其齋去事目 一 本國人與倭人不得雜處及禁相話事 不可先有形迹 使倭疑貳 一 箭箭習射及別藏事 不可顯然布置 使之騷擾 但不可與倭人一處習射 一 凡接對事 不可別有布置 使倭人更生疑意”

85) 정현재, 앞의 글, 136쪽.

86) 이때의 대마도 정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문종의 앞의 책을 참조할 것.

87) 『世宗實錄』 권4, 1년 5월 13일 정사 “黃海道監司飛報 … 賊船三十八艘 乘霧暗突至圍之 逼脅求糧 … 遣以米五斛酒十瓶 賊拘吏又索糧 思儉遣鎮撫二人船軍一人 遣以米四十斛 賊還吏及鎮撫 又拘船軍 與思儉等相持 … 兩上甚憂之 卽命大護軍金孝誠爲京畿黃海道助戰兵馬使 前禮賓少尹張友良黃海道敬差官 因令孝誠率別軍藥匠二十人 友良率三十人 卽日發行 … 召見朴崙李原及趙末生李明德于內 密議乘虛殲賊對馬 退遯賊還之策 夜分乃罷”

된 후 그를 주도하였던 상왕 태종의 宣旨를 정벌군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도 역시 경차관이였다. 당시 대마도로 출정했던 군사들이 마파람에 밀려 거제도도 돌아왔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상왕은 병조 정랑 權孟孫을 경차관으로 삼아 속히 발선하라는 독촉의 뜻을 전하기도 했던 것이다.⁸⁸⁾

그런데 왜인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군사적인 접전이 되면, 적을 제압하는 것이 공적이 되고 그로 인해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리하여 혹 조선 관리 가운데에는 왜적이 아니라 문인을 가진 민간 왜인을 의도적으로 죽임으로서 공을 바라고자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세종 24년 10월 6일 전라도 처치사 李恪이 급히 보고하여 呂島副千戶 崔浣이 今音毛島의 東面 毛兒浦에 도착한 왜인 11명을 참수했음을 알렸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세종은 굶주려 피곤한 倭賊을 모두 참수한 까닭을 推鞠하라고 병조에 전지했다.⁸⁹⁾ 병조는 그 이틀후 최완이 賊倭가 아닌 민간 왜인을 죽인 것이라 의심된다며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히 조관을 보내어 추책하라고 계했다.⁹⁰⁾ 대호군 金連枝가 즉시 파견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세종이 최완의 공을 상 주지 않고 도리어 경차관을 파견하여 실상을 파악도록 한 것은 그의 행위가 ‘有違交隣之道’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⁹¹⁾ 이때에 내려간 김연

88) 『世宗實錄』 권4, 1년 6월 20일 기사 “是日 上王 以赴征將士發船之報 不來 命刑曹參判洪汝方爲體覆使 適柳廷顯報至云 十七日庚寅已發船 乃止 尋聞諸將 以風逆還巨濟 命兵曹正郎 權孟孫爲敬差官 授宣旨遣之 宣旨曰 今月十一日甲申 乃發船吉日 而諸將不肯發船 十二日乙酉 乃發船到巨濟 至十七日庚寅 又不肯發船 且諸將報云 十七日發船 以風逆還巨濟 此皆行軍大事 卿何不分辨以啓乎 右各日遲留事由及逆風眞僞 其速分辨以啓 且宜督諸將發船”

89) 『世宗實錄』 권8, 24년 10월 6일 기사 “全羅道處置使李恪馳啓 倭人到今音毛島東面毛兒浦下陸 呂島副千戶崔浣追及與戰 斬十一級 其餘皆中箭溺死 遂獲槍劍弓箭魚鹽等物 傳旨兵曹飢困之倭 一不生擒 盡殺斬頭 其推鞠情由以聞”

90) 『世宗實錄』 권98, 24년 10월 8일 을미 “兵曹啓 呂島千戶崔浣 追及倭船 倭人勢窮乃下陸 初無拒戰之迹 不以言語開諭生擒 乃盡殺無遺 且所持軍器數少 而多釣魚之具 疑非賊倭 乃是釣魚飄風之船 又分竄山間 至第四日乃被獲 甚爲困頓而無拒戰之理 其日相遇拒戰 亦難取實 乞速遣朝官推覈 從之”

91) 『世宗實錄』 권98, 24년 10월 11일 무술 “謂右議政中樞左贊成河演禮曹判書金宗瑞曰 今崔浣所獲倭人 若以釣魚而來 則不問是非 盡捕斬之 有違交隣之道 然釣魚者 亦或有盜竊之時 不可不捕 崔浣之事 較其功過 則功大於過 賞罰何以處之 概等啓曰 上教允當 請遣剛明朝官

지는 11월 13일 조사 내용을 치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최완은 육지로 내려오는 왜인을 일부러 손짓하여 부른 것이었고, 그들이 圖書文引을 보여주는 데도 모두 참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禁錮시키고 다시 推鞠하라고 했다.⁹²⁾ 이러한 경차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완은 義禁府에 구금되어 사유를 다시 추궁받았다.⁹³⁾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대마도 宗貞盛이 쌀 1백 섬과 말 2필을 청했는데, 조선으로서는 혼단이 일어날지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⁹⁴⁾ 최완은 이듬해 4월에 공을 억지로 꾸며서 상을 받고자 한 죄로 處斬이 결정되어 金海府로 보내져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게 되었다.⁹⁵⁾ 이때에 세종은 죄인을 특히 김해부로 보내어 사형집행 날짜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그것은 왜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선전하기 위함이었다.⁹⁶⁾ 결국 이 사실은 종정성에게 알려졌고, 종정성은 최완을 죽이는 것이 도리어 ‘違交隣之義’라 하여 살려줄 것을 청했다.⁹⁷⁾ 그러나 교린의 도를 어그러뜨렸다는 원죄는 용서받지 못했고, 최완은 결국 동왕 26년 9월 乃而浦에서 참수되었다. 그리고 많은 왜인들이 동족을 죽인 그가 처단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⁹⁸⁾

審覈 然後區處使 上從之 卽遣前大護軍金連枝 審覈以聞”

92) 『世宗實錄』 권98, 24년 11월 13일 기사 “全羅道敬差官金連枝馳啓 呂島副千戶崔浣 非追逐倭人與戰 倭人到今音毛島下陸 浣揮手招來 倭親呈圖書文引 浣見之 竝斬首 浣自知其罪 逃匿可慮 請禁身推鞠 從之”

93) 『世宗實錄』 권99, 25년 1월 28일 갑신(4-459).

94) 『世宗實錄』 권99, 25년 2월 25일 신해(4-464).

95) 『世宗實錄』 권100, 25년 4월 21일 병오 “義禁府啓 呂島千戶崔浣鎖撫姜末生 欲邀功受賞 擅斬降倭十一人 請依律處斬 又鎖撫周思義裴湛 亦依律杖一百 流三千里 從之 仍命送浣于金海府 堅囚待時 末生思義 湛減一等”

96) 『世宗實錄』 권100, 25년 5월 22일 병자 “傳旨慶尙道觀察使 今送崔浣于金海府 囚禁待時者 欲使倭人知浣殺釣魚倭人而身被極刑也 今聞秘而不露 有乖事體 雖不可使之知會 然使自傳播於各浦來到倭人”

97) 『世宗實錄』 권101, 25년 7월 14일 정묘 “宗貞盛遣沙伊文等 奉書禮曹曰 前者頓沙文還言 將誅崔浣 今雖殺浣 我管下人 豈有復生之理 且違交隣之義 請勿殺之 下禮曹 與議政府同議 以聞 僉議啓曰 宜答書云 謹以啓達 若沙伊文更問 宜答云 國家自有區處 從之”

98) 『世宗實錄』 권106, 26년 9월 9일 갑신 “義禁府啓 崔浣 邀功殺釣魚倭 請斬於乃而浦 廣示

이를 통해 조선초기 대외 교린활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은 남방 왜인과의 충돌을 가능한 한 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⁹⁹⁾ 이는 왜구의 위협이 조선의 연안을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왜적들의 출현이나 왜적들과의 충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즉시 경차관을 파견하여 그를 처리하도록 했다.

세조 9년 윤7월 제주에서 포획된 倭人을 鞫問하기 위해 경차관을 파견되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이때에 경차관은 倭人이 소지하고 있는 軍器와 물건의 出處를 조사하고, 그들이 해적인지 아닌지를 국문하여 판단하고, 이를 중앙에 馳啓하는 임무를 담당했다.¹⁰⁰⁾ 또한 성종 9년에는 조선의 海鎧船 5척이 해적선 2척의 습격을 받아 4명이 살해되었다는 全羅道水軍節度使의 계문이 올라오자 그 실상을 의심한 정승들의 청에 따라 경차관이 즉시 파견되기도 했다.¹⁰¹⁾ 그리고 동왕 20년 전라도 興陽縣 築頭里 등지에 침입한 倭船 6척이 주민들의 의복과 양식을 약탈하고, 萬戶와 충돌하여 船軍이 피살되고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관찰사의 馳啓가 있자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경차관의 파견이 즉시 이루어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¹⁰²⁾

요컨대 조선초기 경차관은 남방의 왜에 대하여도 강은 양면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왜인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 왕의 의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회유하고 설득했다. 또한 경차관은 제한적인 테두리 내에서나마 왜인들이 무역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실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왜인들과의 갈등이 야기되었을 경우, 즉시 실상을 파악하여 그들을 처벌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의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결

倭人 從之”

99)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河宇鳳이 지적하고 있다. 河宇鳳, 앞의 글, 1995, 370쪽.

100) 『世祖實錄』 권31, 9년 윤7월 을해조(7-582).

101) 『成宗實錄』 권91, 9년 4월 계사조.

102) 『成宗實錄』 권234, 20년 11월 신미조(11-541).

국 조선 초기 남방 왜와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경차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5. 맺 음 말

조선초기 경차관은 당하관급 봉명사신으로서 국가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경차관은 나아가 북방 여진과 남방 왜인에 관련된 실무에도 종사하였다. 조선초기의 대외정책은 명에 대한 전통적인 事大를 고수하면서 북방 여진과 남방 왜인에 대해서 강은양면정책을 구사하는 교린관계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바로 경차관이었다.

조선초기 경차관이 북로남왜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되었음은 그것이 국내 문제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은 북방 여진들의 거주 지역을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조선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남방의 왜인들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북로남왜는 조선 백성들의 안위와 직결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북로남왜의 문제는 외교적인 의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초기 경차관은 북방의 여진에 대해 그들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는 한편 그들을 위무하여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 위에서 활동하였다. 이 시기 경차관은 해당 여진의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그들에게 조선왕의 위무의 뜻과 하사물을 전달하였다. 나아가 이 시기 경차관은 북로들이 조선의 영역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도 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불가피한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경차관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정세를 정탐하거나 혹은 전투가 끝난 후 결과를 조사하고 인민

의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경차관의 활동으로 조선의 북방 여진에 대한 교린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조선초기 경차관은 남방 왜인에 대한 활발한 교섭활동도 전개했다. 이 시기 경차관은 대마도 등지로 파견되어 왜인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선 왕의 의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회유하고 설득했다. 또한 경차관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왜인들이 조선과 무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러나 왜인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면 경차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가서 실상을 파악하고 재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인들에게 경고하였다. 결국 조선 초기 남방 왜와의 원만한 외교관계도 이러한 경차관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초기 경차관의 대외활동을 통하여 조선초기 교린외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은 군신의 관점에서 북방 여진과 남방 왜인을 바라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의 통치대상이었던 것이며 경차관의 파견은 바로 그 점을 시사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8. 1. 28, 심사완료일 : 2008. 3. 24)

주제어 : 조선초기, 경차관, 야인, 왜인, 교린정책, 시행, 외교관계, 사대, 군신, 위협, 종족

<부록> 조선초기 경차관의 대외교린 활동

왕	년	파견월	이름	경 직	파견지역	파견목적	비고	
태종	2	7	崔關	禮賓寺尹	西北面	야인 초무	야인	
		11	金繼志	大護軍	東北面	敎書 頒布	야인	
	5	9	曹恰		東北面	童猛哥帖木兒에게 說諭	야인	
	6	6	車指南	上護軍	東北面	李好心波의 押送	야인	
	8	2	李穀	大護軍	東北面	漫散軍의 推刷	야인	
			李騰	漢城少尹	西北面			
			韓有紋	內膳少尹	西北面			
			李灌	宗簿令	忠淸道			
			韓雍	大護軍	忠淸·全羅道	對倭 戰鬪의 감독	왜인	
	10	2	朴楸	大護軍	東北面	慶源 事變의 體探	야인	
黃碩中			大護軍	東北面	童猛哥帖木兒에게 酒饌 賜與	야인		
3		田興		東北面	童猛哥帖木兒의 慰撫	야인		
4		韓宗會	知印	東北面	慶源 事變 당사자 위무	야인		
		5	尹夏	上護軍	東北面	慶源 事變 사상자 피해 상황 조사	야인	
5	5	朴楸	大護軍	東北面	慶源의 陵室 宿衛·野人 招安	야인		
원	5	張友良	前禮賓少尹	황해도	왜선과의 대처	왜인		
	6	權孟孫	兵曹政郎	거제도	대마도정벌군에게 교지전달	왜인		
	윤12	韓有紋	判內資寺事	함길도	야인과의 충돌상황 조사	야인		
세종	6	2	柳季聞	右司諫	함길도	야인 초무	야인	
		5	池舍	大護軍				
		6	李叔時	典農寺尹	함길도	경원 침절제사 이징옥의 야인과의 충돌과 방어 상황 조사	야인	
	18	3	敬差官		경상도	왜인 거주자의 처리	왜인	
		5	6	安完慶	예문 직제학	평안도 閭延	침입 야인을 방어하지 못한 침절제사 金允壽의 추문	야인
		10	12	趙遂良	判軍資監事	함길도	야인과의 전투 상황 조사	왜인
	21	4	李藝		대마도	교린정책의 사목전달	왜인	
22		6	金光晬		평안도	변방 방비와 야인과의 충돌 상황 조사	야인	

왕	년	파견월	이름	경 직	파견지역	파견목적	비고
세종	24	11	金連枝		전라도	왜인과의 전투상황 조사	왜인
	25	6	李繼賢		경상도 내이포	내이포 거주 왜인의 동태조사	왜인
		7	朴元亨		전라도 羅州	바다에 표류된 사람 推考	왜인
	26	7	金文起		평안도	野人과의 접전 상황 조사	야인
	29	4 5	禹孝剛	奉常寺尹	평안도 茂昌	野人의 茂昌 入寇 事由 조사	야인
5		趙彙	前兵曹佐郎	對馬島	교린외교실무	왜인	
단종	2	12 3/4	元孝然	僉知中樞院事	對馬州	계해약조를 어긴 까닭 추궁	왜인
		6	康孝文	藝文館直提學	咸吉道	야인 정세의 정탐	야인
세조	5	8 8	吳伯昌	兵曹正郎	咸吉道	야인 浪李兒罕 부자의 체포	야인
		9	金國光	義禁府知事	咸吉道	야인 浪李兒罕의 처리	야인
		11	康孝文	藝文館直提學	咸吉道	야인 兀良哈과의 화해 도모	야인
			具信忠	訓練觀使	咸吉道	浪李兒罕의 변방 침입 소문에 대한 대비책을 도질제사 楊汀에게 전함	야인
		6	1	李繼孫	司憲掌令	咸吉道	여러 將帥의 宣慰
	2		康孝文	藝文直提學	咸吉道	야인 정세의 정탐	야인
	3		金國光		咸吉道	야인 공격에 대한 유시를 도질제사 楊汀에게 전함	야인
	7	3	李經	兼司僕寺尹	咸吉道	都體察使와 都節制使에게 賊虜의 침입에 따른 격퇴 功勞를 등재하여 계달하도록 유시	야인
		6	李埵	訓練副使	慶尙道	船軍의 倭人 交遊 금지	왜인
		7	金致元	行上護軍	對馬州	중성직에게 벼슬을 제수한 세조의 뜻을 효유	왜인
		8	李繼孫	成均司藝	對馬島	왜인과 본국인의 싸움에 대해 중정성에게 유시	왜인
	8	9	許琮	司諫院正言	咸吉道	都體察使와 都觀察使에게 사목전달	야인
	9	윤7	權綸	左翊衛	濟州	왜인의 도적질 여부 국문	왜인

왕	년	파견월	이름	경 직	파견지역	파견목적	비고	
세조	10	5	金升卿	承文院校理	평안도	理山에 이른 중국인의 취초	야인	
		7	具達忠	藝文直提學	경상도 三浦	(對馬島 사신 秦盛幸의 護送官) 買入時 僧人 등의 倭人 劫奪 사건과 三未羅의 致死 원인 鞫問	왜인	
예종	1	6	李淳叔	行司果	平安道	중국의 長牆 축조의 정세 정탐	야인	
성종	즉위	12	朴繼姓	訓練院副正	咸鏡道	야인 이거을가개를 죽인 일의 처리	야인	
		2	2	裴孟厚		慶尙道	三浦 私商人의 推鞠 제읍 수령의 검찰	왜인
	3	4 1	金春卿		경상도	왜호에 투점하거나 용인한 관리의 추국	왜인	
		6	朴始亨		영안도	야인과의 충돌 상황 조사	야인	
	4	11	李德崇		永安道	愁州兀良哈의 存撫	야인	
	5		8	金升卿		경상도	해적출현조사	왜인
			10	洪貴達		永安道	鍾城에서 반란을 일으킨 야인을 잡은 節次를 推問하고, 적을 포착한 유공자들의 등급을 매김	야인
		12	許誠	僉正	平安道 理山	兀良哈과의 교전 상황 조사	야인	
	6	11	金自貞		對馬島	대마도주의 賊倭격퇴와 그 아들의 醜禮축하	왜인	
			裴孟厚	議政府舍人	경상도	對馬島代官 仇難都老의 방문 이유 조사	왜인	
	7		5	金首孫		平安道	兀狄哈 모욕사건 조사	야인
			11	敬差官		경상우도	失火한 薺浦 倭戶의 진휼	왜인
		12	金升卿	宗簿寺正	함길도	서울로 온 중국인 망명자의 행적 조사와 단속하지 못한 수령의 국문	야인	
9	2	경차관		대마주	三浦거주 왜인의 증가에 대한 경고	왜인		
	4	李蓀		전라도康津	해적의 침입상황조사	왜인		

왕	년	파견 월	이름	경 직	파견지역	파견목적	비고	
성종	10	3	安琛		平安道	불이 난 渭原郡民의 상태 조사	야인	
		5	南季堂		濟州	琉球國에서 돌아온 표류 제주 민의 소환과 조치	왜인	
		7	丘致岷		대마도	島主의 變詐 힐책	왜인	
	13	6	경차관		영안도	향화야인과 도망 간 富寧죄수 처리	야인	
		윤8	姜龜孫		永安道	귀화 야인의 처리	야인	
	16	11	鄭誠謹	弘文館典翰	永安道 會寧	야인과의 충돌조사	야인	
	17	7	12	金梯臣		永安道	야인 馬毛多赤의 招撫	야인
		12	鄭誠謹		대마주	왜인의 官服 버린 일 힐책	왜인	
	20	11	李從允		전라도	왜적과의 교전 피해 조사	왜인	
	21	9	경차관		평안도	야인에게 被殺된 人物의 有無 推劾軍功의 상고	야인	
		10	柳順汀 李永禧		全羅道	水賊의 追捕	왜인	
	22	1	鄭光世		영안북도	兀狄哈과의 접전 상황 조사 사로잡혀간 人畜 추쇄	야인	
		2	경차관		영안북도	경흥지역내 거주민의 야인내 응상황조사	야인	
		7	鄭光世 金世英	義禁府經歷	江原道	울진에서 잡힌 부산포 거주 왜인의 조사	왜인	
	24	8	洪湜		평안도	碧團 城子 수축감독, 야인에 게 납치당한 군사사건 조사	야인	
		9	金永貞		영안도	야인피로인 추문	야인	
		10	鄭錫堅		경상도	倭人의 推鞠	왜인	
	25	3	權柱	弘文館 副應教	대마도	宗貞國에게 보내는 致書 전달	왜인	
		4	鄭錫堅		경상도	魚梁의 금지	왜인	
		4	權五福		경상도	왜인에게 살해된 水軍에 대해 啓聞하지 않은 節度使 추국	왜인	
6		7	權柱		대마도	어량을 정탈한 왜인의 과죄	왜인	

<ABSTRACT>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Policies to the Jurchens and the Japanese Marauders of the Kyongchagwan during the Early Joseon

Kim, Soon-nam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Joseon Dynasty the *Kyongchagwan*, a title given to official *Tanghagwan*-level *Pongmyong-sasin* (royal envoys), were regularly dispatched to local areas to oversee and manage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affairs. The *Kyongchagwan* were also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n the ground of the policies pertaining to the *Jurchens* that lay to the north and the Japanese Marauders located to the South. While Joseon's foreign policy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dynasty revolved around the traditional notion of *sadae* (serving the Great, Toadyism) towards China's *Ming* Dynasty, there was also a cautious effort to use a mixture of carrots and sticks in order to establish amicable relations with both the *Jurchens* and Japanese Marauders. To this end, the *Kyongchagwan* were the one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tenets of Joseon's foreign policy.

The dispatch of *Kyongchagwan* during early Joseon to deal with the barbarians to the north and Japanese Marauders in the South (北虜南倭, *Bungno-namwae*) can be taken as proof that the issues related to the *Jurchens* and Japanese Marauders were regarded as internal ones. Joseon considered the *Jurchen*-populated areas to the north as falling within the sphere of Joseon Dynasty both from a historical and actual standpoint.

This notion also applied in the case of the Japanese Marauders to the south. Furthermore, as the issue of the Jurchens and Japanese Marauders was directly related to the security of the people of *Joseon*, they were also perceived as actual threats to *Joseon*. For these reasons, the issues of the *Jurchens* and Japanese Marauders were regarded as internal problems rather than matters that had been addressed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diplomacy.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Joseon* Dynasty, the activities of the *Kyongchagwan* vis the Jurchens were based on the fundamental policy of maintaining the peace by making amicable gestures while refraining from actions that might lead to military conflicts. During this period, the *Kyongchagwan* even directly visited *Jurchen*-populated areas in order to convey messages and gifts from the *Joseon* kings. Moreover, the *Kyongchagwan* also took steps to allow the barbarians living in the northern (*Bungno*) areas to take up residence in areas controlled by *Joseon*. Meanwhile, whenever the inevitable military conflict emerged, the *Kyongchagwan* would collect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relevant area prior to the battle and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relevant residential areas after the ceasing of hostilities. These activities on the part of the *Kyongchagwan* allowed *Joseon* to successfully implement its good-neighbor policy toward the *Jurchens*.

Another important task of the *Kyongchagwan* during the rearly *Joseon* was that of negotiating with the Japanese Marauders to the south. To this end, the *Kyongchagwan* were dispatched to the island of *Tsushima* to conciliate and persuade the Japanese Marauders of the *Joseon* king's desire to maintain peaceful relations with his neighbors to the south. Although only in a limited capacity, the *Kyongchagwan* also took steps to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trade with *Joseon*. However, whenever conflicts or clashes emerged with the Japanese Marauders, the *Kyongchagwan*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affairs and to warn

the Japanese to take steps to avoid the reemergence of such incidents. In conclusion, the activities of the *Kyongchagwa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smoot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Japanese Marauders during the early *Joseon*.

A look at the *Kyongchagwan*'s international activities provides us with insight into the actual state of *Joseon*'s foreign policy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dynasty. In this regard, we can surmise that *Joseon* perceived the *Jurchens* to the north and the Japanese Marauders to the south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subject (君臣, *Gunsin*). The *Jurchens* and Japanese Marauders were thus regarded as subjects to be ruled. Therefore, the dispatch of the *Kyongchagwan* to deal with the *Jurchens* and Japanese Marauders can be perceived as belying *Joseon*'s perception of these tribes.

Key Words : *Kyongchagwan*, *Jurchens*, Japanese Marauders, *Joseon*'s Foreign Policy, Implementation, Diplomatic Relations, *Sadae*, *Gunsin*, Threats, Tribes